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특징과 도입 효과

김 상 만*

- I. 머리말
- II.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특징
- III.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도입 효과
- IV. 맺음말

요약

남북간 청산결제제도는 남북간 거래가 민족내부 거래임에도 경제체제가 다른 점을 반영하여 협정은 당국간에 체결하되 실제 거래는 민간교역방식(남북 기업들간 계약방식)을 채택하였다. 청산방식은 현금청산과 함께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청산을 허용함으로써 북한이 적자(반입초과)가 될 경우 경화(硬貨) 부족에 따른 청산결제의 중단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남북간 청산결제제도는 기존의 교역 및 결제 형태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여겨진다. 남북간 교역은 여전히 중국 위주의 제3국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에 의존하고, 남북간 환거래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결제형태 역시 제3국 은행을 통한 송금환(T/T, M/T) 등 간접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청산결제제도 시행으로 직교역체제와 직접결제방식이 정착되고 대금결제 안정성 제고에 따른 북한으로의 반출 유인 증가로 거래성 교역수지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진국과 저개발국사이에 나타나는 수직분업형태의 산업구조 보완 효과와 중국, 일본 등에 대한 북한의 수출입 품목중 일부가 남한과의 반출입으로 전환되는 무역 전환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이 외에도 청산결제업무 수행에 따른 상시 협의를 위해 남북 당국간 상호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은행간 금융협력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심사역

I. 머리말

1984~85년 남북경제회담에서 남북간 청산결제제도 도입이 처음 논의된 이래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같은 해 12월 16일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포함한 4개의 경제협력합의서¹⁾가 서명되었다. 2004년 4월 22일 남북 당국간 '남북사이의 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2004년도 합의서'가 가서명되고 6월 25일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가 가서명됨으로써 청산결제가 남북교역에 있어 주요한 대금결제방식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향후 남북 당국간 청산결제거래 대상품목이 확정되면 남북 당국간 및 청산결제은행간 가서명된 합의서가 정식으로 서명되어 발효되고, 남북 청산결제은행간에도 코레스 협정(correspondent agreement)이 체결되어 청산결제업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본틀은 모두 갖추어 질 것이다.

남북간 청산결제는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남북간 교역에 있어 기존의 간접 교역 위주의 교역형태 및 제3국 은행을 통

한 대금결제방식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남북교역의 양적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청산결제제도가 남북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청산결제제도 시행은 처음 논의에서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이전에 청산결제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도입 배경과 청산결제업무가 이루어지는 절차 및 제도의 특징을 짚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산결제제도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제도의 도입배경, 청산결제 운영체계 및 절차, 합의서 내용을 통해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특징을 알아보고, 남북교역 및 결제형태에 미치는 영향과 부수적 효과 측면에서 도입 효과를 간략히 짚어 보았다.

단, 향후 남북 당국간에 체결될 대상품목에 대한 세부합의 내용, 제도운영에 대한 의지 및 제도시행 후 보완·변경될 절차 등에 따라 청산결제제도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현 시점에서의 실증적인 효과 분석은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1) 남북사이의 청산결제, 투자보장,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및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II.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특징

1. 청산결제제도의 의미

청산결제제도는 청산결제협정을 맺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²⁾ 혹은 연계무역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으로 통상 '일정기간 교역 후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청산결제협정상에 대략적인 교역 규모와 품목, 수량, 수송방법 등을 명시한 후 실제 개별거래의 결제는 매 건마다 하지 않고 양국의 중앙은행 또는 청산결제 지정은행에 상호 개설된 청산계정에 거래대금만 기재하였다가, 6개월 혹은 1년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출과 수입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청산결제방식은 외환 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을 통제하는 개도국이나 중앙계획경제체제인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로 활용해 온 방

식으로 1970년대 이후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은행간 청산결제협정'이나 '무역상사간 소규모 청산결제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사용하는 ALADI(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 지불협정³⁾과 말레이시아 BPA(Banking & Payment Arrangement) 지불협정⁴⁾은 청산결제방식에 신용장방식이 결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⁵⁾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동남아 국가들과 BPA를 추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인도네시아 Bank BNI와 BPA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⁶⁾

청산결제제도는 통상 국가간 청산결제 대상품목, 품목별 한도, 신용한도, 청산통화, 결제방식 등이 협정에 규정되는 형태로 사용되므로 국가간의 협정무역 혹은 관리무역으로 인식된다. 또한, 결제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출 및 수입과 연계하고 일정 기간마다 수출입 결제대금의 대차차액만을 결제

- 2) 쌍방 국가간 수출입 거래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물건으로 결제하여 대차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물물교환(Barter Trade) 제도를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협정을 통해 경화(硬貨)의 이동 없이 교역상대방의 수출과 수입을 연계하여 상품, 용역,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의 한 형태이다.
- 3)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11개국이 EC(유럽공동체)를 본떠 경제통합을 목표로 1981년 3월에 발족시킨 중남미통합협정(ALADI)에서 활용되는 중앙은행간 지불협정(다자간 협정)으로 신용장제도를 기반으로 각국별로 설정된 Credit Line 범위 내에서 청산방식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분기마다 청산하게 된다.
- 4) 1990년대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된 쌍무적 지불협정 방식으로 ALADI 지불협정과 같이 신용장제도를 이용하나 청산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였다. 1998년 2월 외환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5개국이 상호간 BPA 체결을 시도하였다.
- 5) 고일동, "대북경제협력추진 구체적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 제51차 회의자료(2003. 11. 14), 13쪽.
- 6) 1999년 9월 8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PT.Bank Negara Indonesia(Persero) Tbk(Bank BNI)는 청산계정관리를 위한 BPA를 체결하였다.

하므로 사전에 대금결제용 외화를 준비할 필요를 줄여준다. 마지막으로 교역규모를 상호 확정하고 거래 종료 후 청산을 시행하므로 교역당사국으로 하여금 교역수지의 균형 유지에 노력하게 한다.

2.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도입배경

청산결제제도는 청산계정 차액잔고 청산 시점 이외에는 교역에 있어 결제 가능한 국제통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남북간 교역에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⁷⁾ 물론,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간 교역에서 청산결제를 활용한 오랜 제도 운영 경험을 보유⁸⁾하고 있었고, 교역 상품의 종류나 규모 등이 일정 부분 미리 정해지게 되어 계획경제체제에 적합한 측면도 상당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남한의 경우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대일무역에서 청산결제방식을 이용한 것이 유일한 사례이다.⁹⁾ 그러나 남북 교역규모 확대로 남북교역을 간접교역 방식에서 직교역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

었고, 피폐된 북한 경제의 지원과 함께 북한을 개방경제로 한발 더 접근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단 직후부터 청산결제를 통해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온 동서독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도 청산결제제도는 북한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관심을 가질 만한 모델이었다.

제도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1984~85년에 개최된 남북경제회담에서 청산결제제도가 처음 논의되어 제도 이용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은 청산결제를 기본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남한은 청산협정 체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제3국 은행 발행 신용장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여 회담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후 1990~92년에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직교역 추진과 물자교역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할 것을 합의하고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토록 하였으나,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¹⁰⁾

7) 남북간 청산결제제도 도입이 처음 논의되었던 1980년대 중반 북한은 채무불이행으로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에서 현금결제 이외에 다른 방식은 허용되지 않아 대외무역에 있어 외화부족을 겪고 있었다.

8) 북한은 다자간 청산결제제도가 붕괴된 1991년까지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은 청산결제제도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1975년 비동맹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이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일부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에도 청산결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9) 유승호, 『남북간 청산결제제도 도입의 효과』, 한국수출입은행, 2003. 10. 29, 2~3쪽.

10) 국제가격 적용 등에는 합의했으나, 청산결제은행 지정, 청산계정의 범위와 결산, 신용한도(대월제도) 등 대금결제와 자본이동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남북 공동선언’¹¹⁾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00년 12월 16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청산결제합의서)를 포함한 4개 경제협력합의서에 서명하고, 2003년 8월 20일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남북간 경제활동에 최초로 국제관행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청산결제합의서’ 이행을 위해 2003년 7월 31일 제2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에서 양측 청산결제은행이 공식 선정¹²⁾ 되고, 2003년 이후 3차례에 걸친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회의를 거쳐 2004년 4월 22일 남북 당국간 ‘남북사이의 청산결제거래를 위한 2004년도 합의서’(2004년도 청산결제합의서)가 가서명되었다. 2004년 1월 이후 4차에 걸친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접촉 후 2004년 6월 25일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도 가서명됨으로써 청산결제를 시행할 제도적 기반이 모두 갖춰지게 되었

다.

향후 남북간 청산결제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국간 및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 발효 후 청산결제은행간 코레스협정¹³⁾ 체결과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¹⁴⁾ 등의 반출서류 전달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3.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운영체계 및 지원절차

가. 운영체계

남북 청산결제제도는 남북 당국간 및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에서 기본틀을 정하고 실제 교역은 민간경제단체를 거래중개기관(알선창구)¹⁵⁾으로 하여 남북 기업이 직접 계약에 의해 교역을 진행함으로써 시장경제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산결제에 참여하는 남북 당국, 청산결제은행 및 거래중개기관은 청산결제제도 운용에 있어 일정

1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한 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경제협력·사회·문화·체육 등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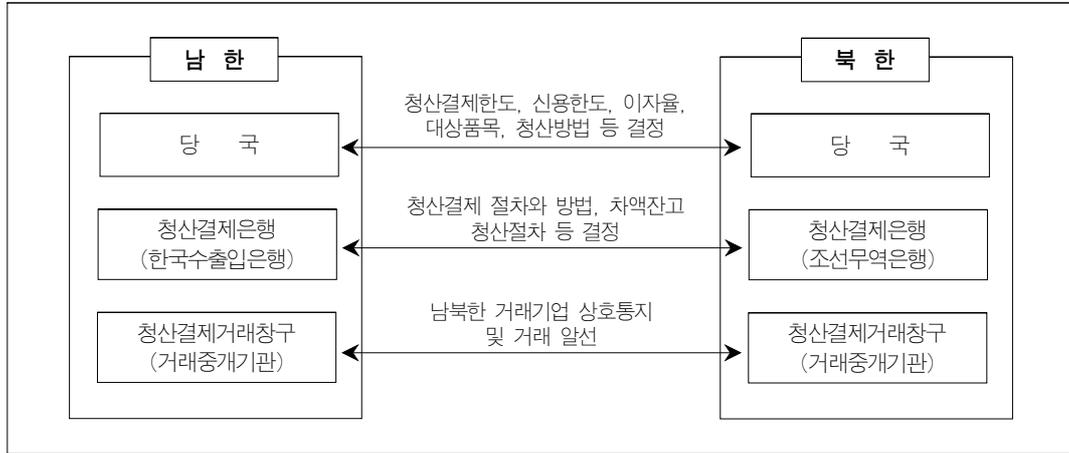
12) 남한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조선무역은행)

13) 청산결제 대차거래 확인, 대기통지서의 발수신, 서류의 진정성 확인, 청산계정 차액잔고의 청산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SWIFT를 이용한 Bilateral Key Exchange(BKE) 교환에 의한 코레스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1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남북교역물품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은 남한은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 포함), 북한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최근 ‘민족경제협력위원회’로 확대개편)이다. 현재 남북간에는 2003년 8월 28일 합의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이 2003년 12월 29일 북측 발행 원산지증명서 5건에 대해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한데 대해 북측이 2004년 3월 2일 그 결과를 통보해옴으로써 시범실시가 완료된 상태이다.

15) “남과 북은 당국이 정한 쌍방 경제단체가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상호 통지함으로써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2004년도 청산결제합의서 제2항.

〈그림 1〉 청산결제제도 운용주체별 역할



범위 내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남북 당국은 청산결제한도, 신용한도, 이자율, 대상품목, 청산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행과정 및 분쟁해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남북 당국간 협의를 위한 채널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경추위 산하의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경협제도실무협의회), 경협제도실무협의회 산하의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청산결제실무협의) 등이 있다(〈표 1〉 참조).

남북한 청산결제은행은 은행간 청산결제

〈표 1〉 남북 당국간 청산결제 관련 기구

구 분	기 능	비 고
남 북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경 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을 주관 민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당국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이행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4~6명으로 구성 위원장 : 차관(부상)급
남 북 경 제 협 력 제 도 실 무 협 의 회 (경협제도실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산결제·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의 후속조치를 우선 논의하고, 4개 경협합의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통행·원산지 확인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석대표 : 국장급 (북한 : 민경련 서기장)
남 북 청 산 결 제 실 무 협 의 (청산결제실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 청산결제 문제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는 실무적인 협의조직 합의서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석대표 : 과장급 (북한 : 국장급)

는 발급된 선하증권(원본), 송장(Invoice), 원산지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각자의 청산결제은행에 대금지급을 요청하면, 반출자측 은행은 개성공단내 개설예정인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등을 통해 반입자측 은행에 반출서류를 발송한다.

반출서류를 접수한 반입자측 은행은 반입업체에 반출서류 내도를 통지하고 반입업체로부터 반입대금 납입 예정일을 확인한 후, 대기통지서를 통해 반출자측 은행에 이를 통지한다.

반입자측 은행은 반입대금 영수 후 반입업체에 반출서류를 인도하고 동일자로 반출자측 은행은 반출업체에 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반입업체는 서류를 인수하여 반입된 물품을 인도받게 된다.

4.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특징

남북간 청산결제 역시 일반적인 청산결제 방식과 같이 남북 당국간 청산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나, 당국은 청산결제 대상거래 품목과 한도 등만을 정하고 실제 거래는 국영 무역방식이 아닌 남북 기업간 계약에 의한 민간교역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거래 품목별 수량, 거래금액 등 계약조건은 남북 기업들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

만, 청산결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민간단체인 쌍방 경제단체를 거래중개기관으로 지정하여 거래알선 등을 지원토록 하였다.

청산결제 대상품목의 결정방식은 특정상품을 제외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아닌 특정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채택하였다. 대상품목 선정시에는 남북교역에서 비거래성 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제외하고 남북 당국이 합의한 상품 및 관련 용역거래에 대해 적용하도록 되어, 대사관 비용 등 일부 비무역 거래가 포함되는 구공산권 교역이나 친척들에 대한 송금이나 배상금도 포함한 동서독간 사례와는 구분된다.¹⁷⁾

청산결제한도 설정방식은 수량한도방식, 금액한도방식, 병행방식 중 남북간 위탁가공교역을 제외한 거래성 교역규모를 고려하여 거래한도를 정하는 금액한도방식을 채택하였다. 결제대상 품목별 한도나 거래가격은 북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인 남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시행초기인 올해는 청산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실제 대상 물품의 교역 가능기간이 짧아 거래성 교역의 1분기 평균 규모 정도에 해당하는

를 하는 경우를 추가(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제3호 신설)할 것을 입법예고하였다. 통일부 공고 제2004-8호, 2004. 6. 1.

17) 위탁가공교역은 위탁계약에 따라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임가공료만 지불하고 완성품을 반입하는 교역거래로 상품 매매계약에 의한 반출입이 독립된 상거래가 아닌 관계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2004년도 남북간 청산결제거래 합의 내용

구 분	합 의 내 용
결 제 대 상	매년 남북 당국간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중 합의 품목(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용역거래 대금 포함, 위탁가공교역은 제외)
결 제 한 도	미화 3천만 달러 범위내
신 용 한 도	연간 청산결제한도의 15% 해당 금액인 미화 450만 달러 이내(이자율 : 연 1%)
청 산 계 정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에 각각 상대방 은행 이름으로 청산계정 및 이자계정을 개설
결 제 통 화	미 달러화(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라 다른 화폐로도 가능)
결 제 기 간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04년에는 시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거 래 원 칙	기업들간 계약방식으로 거래(쌍방 경제단체가 거래 희망 기업들을 지원)
통 지 방 식	SWIFT, 전화, 팩스 등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출자 은행의 반출대금청구 요청에 따라 반입자 은행이 대기통지서로 통보하면, 각각 상대방 은행의 이름으로 된 청산계정에 대기 및 차기 • 청산계정 기장명세서에는 분기별로, 이자계정 기장명세서에는 연도별로 상호 확인
청 산	청산 계정의 차액잔고 및 이자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 달러화 또는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중 상환측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청산
기 타	청산결제은행간 코레스협정(correspondent agreement) 체결(합의서 발효후)

금액(미화 3천만 달러)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산결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책정하는 신용한도는 거래성 교역액이나 청산결제 거래한도에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정율방식과 일정 금액을 정하는 정액방식 중 청산결제 거래한도에 일정 비율을 정한 후 금액을 정하는 정액방식을 채택하였다. 당초 남한은 청산결제한도의 10%를, 북한은 20%를 제안하였으나 남북 당국이 절충점인 15%를 신용한도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⁸⁾

청산결제통화는 미 달러화를 원칙으로 하되,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해 다른 화폐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북한의 유로화 사용 주장이나, 남한의 유로화 사용시 미 달러 변환에 따른 환변동 우려와 미 달러화 통용관행에 따른 이용상의 불편 주장이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청산결제 이자율의 경우 민족내부간 거래¹⁹⁾임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북 식량차관 및 철도·도로 자재장비차관 공여시 부여했던 이자율 수준인 1%를 적용하였다. 이는

18) 북한은 과거 파키스탄과는 청산결제거래금액의 20%를, 방글라데시와는 북한 수입금액의 5%를 신용한도로 운영하였으며, 구 동서독은 서독의 대동독 반입금액의 10~25%를 설정하였다.

19) 2003년 8월 20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전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였다.

〈표 3〉 청산협정사례 비교

구 분	북 한				동서독	남북한
	소 련	체 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체 결 일	1971. 2. 3.	1990. 11. 1.	-	1977. 8. 12.	1949. 10. 8.	2004. 4. 22.
신용한도	설정	설정	설정	설정	설정	설정
이 자	무이자	n.a.	6~7%	8%	무이자	1%
청산거래 대상품목	상품, 상품 관련 용역	상품, 상품 관련 용역	상품, 상품 관련 용역	상품, 상품 관련 용역	상품, 상품 관련 용역	상품, 상품 관련 용역
결제통화	루블화	미 달러화	마르크화	파운드화	VE ^{주)}	미 달러화
결제기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차액청산	물자결제 (6개월내 조정된 물자납입)	-	· 3월내 : 물자결제 · 6월경과 : 현금결제	현금결제	차관전환	물자 또는 현금결제
품목선정	Positive list 방식	Positive list 방식	Positive list 방식	Positive list 방식	Positive list 방식	Positive list 방식
교역규모	설정	미설정	설정	설정	미설정	설정
품 목 별 한 도	설정 (초과 가능)	미설정	설정	미설정	쿼터품목만 설정	미설정
품 목 별 가격표시	연례의정서에 표시	미표시	미표시	미표시	미표시	미표시
가격결정	매년 은행간 합의	국제시장가격 (민간계약방식)	국제시장 가격	국제시장 가격	서독시장 가격	국제시장가격 (민간계약방식)
청산계정 설 치	특별계정	-	-	-	부속계정 3개 (쿼터품목, 비쿼터품목, 관련용역)	청산계정, 이자계정
기 타	-	세부사항 : 은행간 합의서	최혜국대우 명기	최혜국대우 명기	-	세부사항 : 은행간 합의서

주 : VE(berechnungs Einheit)는 명목상 청산결제통화단위로 동서독간 무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불거래 수단이었다. 공식환율은 1DM(서독 마르크)=1VE=1Mark(동독 마르크)이나, 실제 VE는 서독의 마르크와는 1:1 비율로, 동독 마르크와는 1:4.4 정도로 환산되어 거래의 매개수단이지 상품의 등가교환을 보장하여 주는 통화단위는 아니었다.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민족내부간 거래에 이자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북한의 주장과 남북 청산결제 거래의 상거래적 성격을 감안하여 상업성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남한의 주장을

절충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산계정 차액잔고는 다음해 1/4분기까지 청산하며, 청산방식은 현금청산과 계약 방식에 의한 물자반출²⁰⁾ 청산이 모두 가능

20)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청산'은 차액잔고 상환측 기업이 상대측 기업과의 개별 계약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에 따라 차액잔고에 해당하는 물자를 반출하면, 상대측 청산결제은행이 반입물자 대금을 반입기업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는 물자반출에 의한 현물 청산을 허용함으로써 북한이 적자(남한으로 부터의 반입초과)가 될 경우 경화 부족에 따른 청산결제의 중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교역규모는 2003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12.9% 증가한 7억 달러를 넘어서 1989년 대비 38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거래성 교역이 전년대비 19.2% 증가한 4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남북교역 규모가 늘어나면서 간접교역 위주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직교역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중국 위주의 제3국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남북교역에 종사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북한 교역상대방과의 신뢰도, 통신·통행 제약에 따른 거래위험, 문제발생시 해결의 용

Ⅲ. 남북간 청산결제제도의 도입 효과

1. 남북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가. 직교역 비중의 증가

〈표 4〉 대북 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구 분	198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반출 (A)	소 계	178,116	115,269	129,679	211,832	272,775	226,787	370,155	434,965
	거래성 (위탁가공)	-	60,019 (36,175)	51,530 (29,617)	67,553 (45,883)	93,724 (57,224)	62,836 (52,345)	72,770 (68,388)	119,597 (73,370)
	비거래성	-	55,250	78,149	144,279	179,050	163,951	297,385	315,368
반입 (B)	소 계	1,059,235	193,069	92,264	121,604	152,373	176,170	271,575	289,252
	거래성 (위탁가공)	-	190,281 (42,894)	92,159 (41,371)	121,482 (53,736)	152,373 (71,966)	173,476 (72,579)	270,189 (102,789)	289,082 (111,639)
	비거래성	-	2,788	105	122	-	2,695	1,386	170
계	합 계	1,237,351	308,339	221,943	333,437	425,148	402,957	641,730	724,217
	거래성 (위탁가공)	1,212,101 (153,803)	250,300 (79,069)	143,928 (70,988)	189,036 (99,620)	246,097 (129,190)	236,312 (124,924)	342,959 (171,177)	408,679 (185,009)
	비거래성	25,250	58,039	78,015	144,401	179,050	166,646	298,771	315,538
수지 (A-B)	전 체	△881,119	△77,799	37,415	90,228	120,402	50,617	98,580	145,713
	거래성	△906,369	△133,049	△40,629	△53,929	△61,315	△110,639	△197,419	△169,485

주 : 거래성은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치임.
 자료 : 1. 배종렬, "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방안", 『동북아와 남북한 경제협력: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4, 140쪽 및 142쪽에서 가공 작성.
 2.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각호.

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차액잔고와 이자를 상계하는 방식이다. 상환측 입장에서는 현물상환의 의미이고, 상환 받는 측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상환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가진다.

이성 등을 고려하여 중국 등 제3국 무역업자를 통한 간접교역방식을 직교역방식에 비해 여전히 선호하기 때문이다.

2003년 9월 통일부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남북교역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교역 실태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²¹⁾ 응답 업체의 남북교역 종사 유형은 직접교역이 17.4%, 간접교역이 60.1%,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을 병행하는 혼합교역이 22.5%로 간접교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동 조사에서 간접교역방식을 택하고 있는 업체의 64.3%가 직교역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희망하고 있고, 간접교역방식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17%의 업체들은 그 사유를 '납기·품질 및 클레임 관리에 유리', '대금결제 용이', '거래비용의 안정성 확보 가능', '거래선 및 품목 발굴 용이' 등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직교역방식 자체가 간접교역방식에 비해 불리한 것이 아니라, 남북 사이에 직접결제 시스템, 분쟁해결절차 등 경제협력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데 원인이 있다 하겠다.

남북 청산결제제도는 남북 기업간 직접

계약과 각자 자기측 청산결제은행을 통한 직접 결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간접교역으로 거래되던 상품이 청산거래 대상품목으로 정해질 경우 해당 상품의 청산거래액 만큼 청산결제은행간 직접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므로 직교역 비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나. 대북 교역수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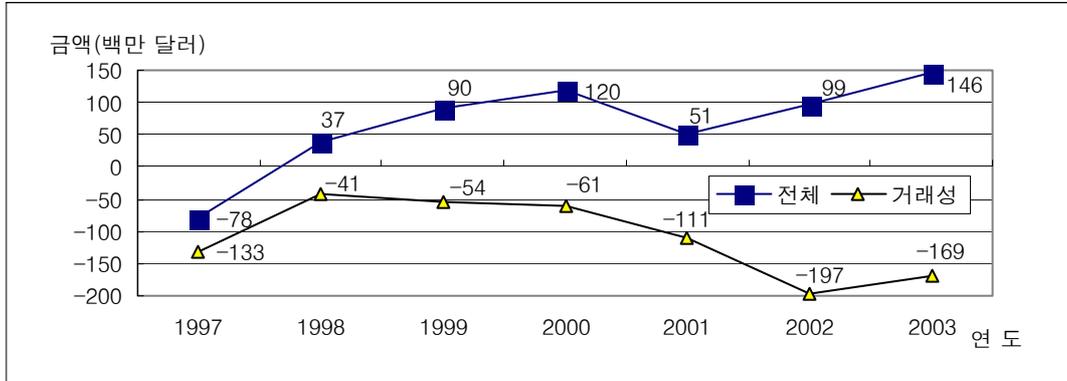
남북교역은 전체적으로 1998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비거래성 반출 증가의 결과이다. 실질교역수지는 1998년도에 잠시 개선되기는 했으나 2001년 이후에는 1억 달러가 넘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반입의 경우,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물자를 반입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물자 반입에 따른 위험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온 반면, 반출의 경우는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²²⁾

한편, 북한은 대외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남한과의 교역에서조차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1) 통일부는 제6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에 따른 직교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2003년 9월 8일부터 23일까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남북교역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응답업체수 139개사). 최근 2년간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북 교역형태, 직교역체제 전환시 장단점 및 과제, 4대 경제협약의서 발효 효과 및 과제 등을 조사하였다. 통일부, "남북교역 실태조사 결과", 2003. 10. 6.

22) 유승호, 앞의 책, 7쪽.

〈그림 3〉 대북 교역수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http://bok.or.kr/index.jsp>)에서 가공 작성.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의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거래성 교역에서는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북교역이 북한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외화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산결제가 시행되면 북한은 외화의 사전준비 없이 물품의 반입과 청산계정 잔고청산이 가능하여 외화조달 원천을 희생함이 없이 남북 청산결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남한으로부터 반입을 증가

시킬 것이다.

즉, 청산결제의 도입은 우리 기업의 대북 물품 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신용한도만큼 외화 결제 없이 남한 물품을 반입할 수 있음에 따라 북한으로의 반출이 증가함으로써 거래성 교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향후 청산결제한도의 증가에 따라 신용한도가 늘어난다면 신용한도액만큼 반

〈표 5〉 북한의 대외교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액	전체	21.8	14.4	14.8	19.7	22.7	22.6	23.9
	(남한)	3.1	2.2	3.3	4.2	4.0	6.4	7.2
수출	전체	9.1	5.6	5.1	5.6	6.5	7.3	7.8
	(남한)	1.9	0.9	1.2	1.5	1.7	2.7	2.9
수입	전체	12.7	8.8	9.6	14.1	16.2	15.3	16.1
	(남한)	1.2	1.3	2.1	2.7	2.3	3.7	4.3
교역수지	전체	Δ3.6	Δ3.2	Δ4.5	Δ8.5	Δ9.7	Δ8.0	Δ8.3
	(남한)	0.7	Δ0.4	Δ0.9	Δ1.2	Δ0.6	Δ1.0	Δ1.4

자료 :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http://bok.or.kr/index.jsp>)에서 가공 작성.

출이 증가할 수 있어 남한의 거래성 교역의 적자가 흑자로 반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남북간 산업구조 보완 효과

2003년도에 북한으로 반출한 품목을 보면 식량·비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물품을 포함한 농림수산물 28.9%, 화학공업제품 21.0%, 위탁가공교역용 섬유류 20.5%, 잡제품 8.3%, 철강·금속제품 6.5%, 기계류 6.4% 등이다. 이와 같이 반출의 경우 식량·비료 지원 등으로 인한 농산물, 화학공업제품을 제외하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이 전체 거래성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반입대금을 결제할 외화가 부족한 데에 일정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입하는 품목의 경우 농림수산물 44.2%,

위탁가공교역용 섬유제품 33.4%, 금과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 철강·금속제품이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수출 주력품목인 수산물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위탁가공교역용 섬유류 제품 및 금, 아연괴 등의 광산물 반입의 결과이다.

청산결제에 의한 남북간 교역이 본격화되면, 현재 남한 기업들은 북한으로부터 어패류 등 농수산물과 아연괴 등 철강·금속제품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반입할 상품이 없어 현재의 교역형태가 지속되고, 북한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어패류, 아연괴 등의 철강·금속제품과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사전에 반입대금 결제를 위한 경화의 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계류, 차량, 전자·전기제

〈표 6〉 대북한 반출입 품목 현황

단위 : 천 달러

순위	반 출			반 입		
	품 목	2003	2002	품 목	2003	2002
1	농 립 수 산 물	125,508	110,197	농 립 수 산 물	127,846	99,901
2	화 학 공 업 제 품	91,406	89,617	섬 유 류	96,527	85,849
3	섬 유 류	89,025	67,257	철 강·금 속 제 품	32,743	18,821
4	잡 제 품	36,298	2,011	광 산 물	17,139	8,600
5	철 강·금 속 제 품	28,079	26,365	전 자·전 기 제 품	8,677	9,534
6	기 계 류	27,900	37,867	생 활 용 품	3,814	3,463
7	전 자·전 기 제 품	21,111	22,116	화 학 공 업 제 품	1,003	603
8	광 산 물	6,296	5,103	기 계 류	831	1,806
9	플라스틱, 고무, 가죽	5,758	4,115	플라스틱, 고무, 가죽	521	548
10	생 활 용 품	3,585	5,507	잡 제 품	149	42,450

자료 : 통일부, 『2004 통일백서』, 2004. 2, 176쪽 및 178쪽에서 가공 작성.

〈표 7〉 남북경협 확대시 유망 사업분야

건 설	섬유 및 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IT 포함)	식음료	기 타
34.4%	37.7%	13.6%	8.5%	7.3%	2.5%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년 주요 기업의 남북경협 현황과 개선과제”, 『Current Issue Paper(CER-2004-37)』, 2004. 9. 9쪽에서 가공 작성.

품 등을 반입하려 할 것이므로, 이들 제품의 반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에 나타나는 수직분업 형태의 산업구조 보완 효과가 남북간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청산결제를 통한 교역이 진전됨에 따라 상호 신뢰가 확보되고 수익성이 일정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내 투자를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서 기업들은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가시화 등에 따른 건설분야와 위탁가공교역으로 수익성을 확보한 일부 섬유 및 의류 분야를 제외한다면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를 남북경협 확대시 유망 사업분야로 선택하였다(〈표 7〉 참조). 따라서 향후 전기·전자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평분업의 형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산결제는 남북 기업간 계약의 방식에 의해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상품은 시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한은 세계시장에서 전자·정보통신은 물론 화장품, 의류 등의 테스트마켓(test market)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북

한은 남한 시장을 테스트마켓으로 활용하여 청산결제 교역상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로 청산결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무역 전환 효과

2003년도 북한의 수입현황을 보면 북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대폭 감소하자 중국, 러시아로부터 원유, 코크스용 유연탄 등 에너지 자원 도입과 중국으로부터 냉동 돈육, 옥수수, 쌀, 밀 등 식량의 수입을 크게 증가시켰다. 기계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북한은 태국으로부터 컴퓨터 부품 및 리프트, 중국으로부터 21인치 이상 중대형 컬러 TV 및 컴퓨터 등을 수입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철강제품 등 비금속류를 수입하고 있다. 차량의 경우 일본, 중국, 독일 등으로부터 중고 승용차, 화물자동차, 궤도 차량 등을 수입하고 있다.

수산물, 어패류의 경우 중국, 일본 등에, 섬유제품의 경우 일본 위탁가공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독일, 방글라데시, 폴란드 등에 수출이 증가하였고, 기계류, 전기·전

〈표 8〉

북한의 대외교역 상위 품목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 출			순위	수 입		
	품 목	2003	2002		품 목	2003	2002
1	동 물 제 품	287,680	261,627	1	광물성 생산품	337,952	235,803
2	섬 유 제 품	133,121	123,003	2	기계·전기전자	282,356	234,574
3	기계·전기전자	93,112	83,884	3	비 금 속 류	172,659	88,137
4	비 금 속 류	89,657	58,285	4	섬 유 제 품	128,113	158,359
5	광물성 생산품	55,518	69,731	5	식 물 제 품	120,518	118,328
6	화학·플라스틱	31,154	43,057	6	동 물 제 품	107,888	103,366
7	식 물 제 품	24,528	28,461	7	화 학 공 업 제 품	104,305	122,024
8	귀 금 속	15,967	14,537	8	유지·조제식료품	96,134	74,879
9	목 제 품	15,163	10,153	9	플 라 스틱 제 품	70,712	65,936
10	기 타	31,093	43,510	10	차 량	61,809	76,000
				11	기 타	131,937	246,727
합 계		776,992	736,245	합 계		1,614,382	1,524,136

자료 : KOTRA,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http://www.kotra.or.kr/main/trade/nk/research/sub0.jsp,) 23쪽 및 31쪽에서 가공 작성.

자제품은 트랜스 및 컨버터 관련 품목의 일 본 위탁가공이 증가했으며 TV용 음극선관, 가열기 부품, 원심분리기 부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철강, 아연괴 등의 비금속류의 경우 중국, 일본, 태국 등지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한편, 청산결제제도가 본래도에 오른다면 북한은 사전에 경화를 준비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상품을 남한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계류, 수송용 차량, TV 등에 대한 수입선을 남한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반면 남한으로의 반출 측면에서는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인 수산물, 어패류의 경우 남

한 수요가 충분하여 전환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남한내 수요가 대부분 위탁가공용으로 거래되어 청산결제에서 제외되므로 전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2. 남북간 결제형태에 미치는 효과

현재 대북교역은 제3국을 경유한 간접교역방식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남북간 직접적인 대금결제체제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비거래성 교역에 해당하는 기타 유무상 결제와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할 때 남북간 교역대금 결제형태는 반출입 모두 제3국 은행을 통한 송금환(T/T, M/T)²³⁾ 및 동시결제

23) T/T : Telegraphic Transfer(전신환), M/T : Mail Transfer(우편환)

〈표 9〉 남북간 결제형태별 교역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결제형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1~7월)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반출	송금(T/T, M/T), 동시결제(COD, CAD) 방식	11,655	79.2	15,691	90.5	16,906	92.2	25,469	95.8
	추심결제방식(D/A, D/P)	380	2.6	165	1.0	75	0.4	26	0.1
	신 용 장 방 식	2,677	18.2	1,480	8.5	1,357	7.4	1,085	4.1
	합 계	14,712	100.0	17,336	100.0	18,338	100.0	26,580	100.0
반입	송금(T/T, M/T), 동시결제(COD, CAD) 방식	98,547	83.1	123,293	77.6	180,681	85.6	83,627	86.4
	추심결제방식(D/A, D/P)	286	0.2	517	0.3	1,502	0.7	14	0.0
	신 용 장 방 식	19,718	16.6	35,107	22.1	28,926	13.7	13,161	13.6
	합 계	118,551	100.0	158,917	100.0	211,109	100.0	96,802	100.0

주 : 비거래성 교역에 해당하는 기타 유무상 결제 및 위탁기공무역 제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통계(<http://stat.kita.net>)에서 가공 작성.

방식(COD, CAD)²⁴⁾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2003년도 남북간 결제형태별 교역현황을 보면, 송금환 및 동시결제방식은 반출의 92%, 반입의 86%를 차지하였으나, 거래대금의 결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용장방식은 반출의 7%, 반입의 14%에 불과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통일부의 '남북교역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조사대상 기업 중 88.2%가 간접결제방식인 제3국 은행을 통한 송금환방식(59.6%)과 신용장방식(26.1%)으로 거래하였으며, 직접현금지급방식이 9.3%, 추심결제방식(D/P, D/A)이 2.5%, 물물교환 또는 물품으로 상환하는 방식이 1.9%였다.

이와 같은 결제형태는 우리 기업에게 환전·제3국 은행으로의 송금에 따른 송금수수료 등 외화거래 비용뿐만 아니라 직접결제에 비해 대금결제까지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하고, 특히 제3국을 통한 송금환방식에 의한 결제에서는 개별기업이 거래에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한다.

청산결제는 제3국을 통한 대금결제에 따르는 외화거래 비용과 거래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대금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하여 준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북측 상대방과 직접적인 외화 결제 없이 남측 청산결제 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반출입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제3국 중개상을 통한 거래

24) COD : Cash On Delivery(현물인도지급), CAD : Cash Against Document(서류상환지급)

에 따른 거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청산결제제도 시행으로 남북간 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가 남북 양측이 지정한 은행간 청산계정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제3국 은행을 경유한 대금결제시의 번거로움을 덜고 환전 및 송금비용이 절약되며, 우리기업이 반출 즉시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남북 은행간 직접결제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3. 부수적 효과

청산결제시행으로 인한 부수적 효과는 우선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계기를 가져오게 할 것으로 보인다. 청산결제가 민간자율방식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간 협정에 의해 세부적인 내용이 관리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정부간 대상품목의 조정, 신용한도의 조정, 북한의 차액잔고 적자 발생시 물자반출 청산 등 실무협약이 필요한 사항이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간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이 가능한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간 청산결제제도는 세부 절차와 운영방식이 양측 청산결제은행에 의해 진행되고 은행의 고유 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회가 필요하므로,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산결제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청산결제제도 증액으로 인해 남북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와 교역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남북간 청산결제제도는 실제적으로 남북 당국에 의해 청산결제한도, 신용한도, 대상품목 등이 관리되기는 하나, 거래 품목별 수량, 금액, 계약 등은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간교역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신용한도의 설정과 남북간 반출입 물품의 질적 차이로 인해 북한이 청산계정 차액잔고의 적자측이 될 가능성이 크에 따라, 청산계정 차액잔고 청산방식을 현금결제뿐만 아니라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 반출에 의해 현물청산도 가능하게 하여 차액잔고 미청산에 따른 청산결제 중단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청산결제가 본격화된다면 기존의 중국 위주의 제3국 중개상을 경유하는 간접교역방식 위주에서 남북 개별기업간 직접계약에 의한 직교역체제가 정착될 것이다. 남한 기업이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한 후 남측 청산결제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

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직교역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대금결제용 외화의 준비 없이도 청산결제대상 남한 물품을 신용한도만큼 원하는 시기에 반입할 수 있으므로 북한으로의 반출이 증가해 남한이 북한과의 교역에서 보여 온 만성적인 거래성 교역 적자가 해소되거나 오히려 흑자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청산결제에 의한 교역이 본격화됨에 따라 남북간 교역대상 품목의 질적 차이로 인해 남북교역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수직적 분업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북한은 반입에 따른 대금결제용 외화의 준비가 필요 없어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일부를 남한으로부터 반입하고자 할 것이다.

결제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대북교역시 교역대금 처리를 위해 주로 활용하는 제3국 은행을 통한 송금환이나 동시결제방식이 아닌,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외환거래 부대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남북간 직결제체제가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북간 청산결제제도는 거래상품을 사전에 정하고 대상품목의 조정, 신용한도의 조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 등을 필요로 하므로, 남북 당국간 협의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청산결제은행간에도 청산

계정의 기장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정하고, SWIFT를 통한 지급지시나 거래내역 확인, 환거래협약 등 은행 고유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므로 남북간 금융협력 역시 본격화되는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편, 청산결제업무가 민간교역방식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실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하는 많은 사항이 발생할 것이므로, 정부는 개별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남북교역이 경직되지 않도록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청산결제 과정상에 개별기업간에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정부의 역할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에게도 청산결제가 국가관리무역이 아닌 민간교역방식에 따라 진행된다는 인식을 재확인시켜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시장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다. 남북간 청산결제제도 시행은 남북간 교역을 질적·양적으로 새로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청산결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은행간 결제대금 지급지시와 확인을 위한 경로의 상시 확보, 신속한 반출서류의 전달 방안, 청산결제 대상물품의 교역거래 절차 등 부속

실무업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산결제 대상품목이 현재의 반출입 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이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대체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남한이 청산결제제도를 통해 수입하는 제품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청산결제 시행에서 발생할 분쟁 해결에 따른 역할 문제, 일반적인 거래 조건들의 정착, 청산결제 대상 신규수요 창출 등과 관련 업체들의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남북 당국간 혹은 청산결제은행간 협의가 필요한 분야가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므로 별도의 정기적인 협의채널이 반드시 마련되어 제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일동, “대북경제협력추진 구체적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경제협력분과위원회 제51차 회의자료 (2003. 11. 14).
- 대외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http://www.kotra.or.kr/main/trade/nk/research/sub0.jsp>).
- 배종렬,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남북경협 4대 합의서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남북경협 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남북경협포럼 발표 논문집(2003. 12. 5).
- 삼성경제연구소, 『남북경협 GUIDELINE』, 2001. 4. 20.
- 유승호, “남북간 청산결제제도 도입효과”, 『수은해외경제』 2003년 10월호, 한국수출입은행.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년 주요 기업의 남북경협 현황과 개선과제”, 『Current Issue Paper(CER-2004-37)』, 2004. 9.
- 정연호, “제6차(2004년 상반기) 남북경협에 관한 교역업체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KDI 북한경제리뷰』 2004년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통일부, 『2004 통일백서』, 2004. 2.
- _____, “제2차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결과해설자료”, 2003. 8. 18.
- _____, “제4차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결과해설자료”, 2003. 12. 20.
- _____, “투자보장등 4대합의서의 타결의의 및 주요내용”, 2000. 11. 13.
- 통일부·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실태조사 결과”, 2003. 10. 6.